

변경 대비 표

1. 변경 대상 펀드 : 동부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2. 효력발생 예정일: 2015년 7월 29일 (수)

3. 변경 내용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변경 (FATCA반영)
-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변경
- 투자전략 내용보완
- 세법개정내용 반영 및 결산에 따른 갱신

항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FATCA반영	(신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 구의 연혁	연혁 추가	-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반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투자전략 내용보완, 규약변경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5. 운용전문인 력에 관한 사 항		-	최근일자 업데이트(2015.7.23)
8. 집합투자기 구 투자대상		②채권 : (생략)~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신설)	②채권 : (생략)~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전자단기사채등(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환매조건부매수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투자전략 내용보완	<p>(1) 동부자산운용 애널리스트의 역량 집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섹터 애널리스트에 의한 책임리서치 체제 구축으로 유망종목 발굴에 주력 -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을 통해 저평가 소외주 적극적 발굴 <p>(2) 가치주 장기투자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R&ROE를 기준으로 선정된 가치주에 대해 주식투자비중의 60% 이상 유지 -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된 우량주 장기보유 <p>(3) 포트폴리오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등분할투자 개념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단, 시가총액, 저평가 정도 등을 감안해 편입비 조정 가능 - 중소형 종목에 대한 투자비중 30% 이상 유지 - 포트폴리오 종목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별 목표주가 도달시 분할 매도 ▪ 회사의 고유경쟁력, 업황 등 펀더멘탈 변동시 즉각 교체 <p>(4) 위험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편입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만큼 종목별 마이너스 수익률 진행 정도에 대해 구간별로 관리 예정 - 특정 섹터에 대한 과도한 투자 자제로 섹터간 위험관리 진행. 	<p>(1) 가치주에 장기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기업분석 및 차별화된 리서치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고 기업가치대비 저평가된 가치주를 발굴하여 장기 투자 ▪ 섹터 애널리스트별로 담당섹터에 대해 책임리서치 체제 구축 ▪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을 통해 저평가 소외주 적극 발굴 *가치주: 낮은 PBR, 낮은 PER,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 등 <p>(2) 포트폴리오 구성 및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주 중심으로 시가총액, 저평가 등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 구성 ▪ 거래소 중소형주 및 코스닥종목 투자비중은 주식투자비중의 30% 이상 유지 - 시장상황 및 개별종목의 주가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조정 ▪ 종목별 목표주가 도달 시 분할 매도 ▪ 회사의 고유경쟁력, 업황 등 펀더멘탈 변동 시 종목 교체 * 중소형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편입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의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 ② 다만, 주식의 편입시점에는 중소형주에 해당하였으나 편입이후 중소형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종목은 중소형주로 분류 <p>(3) 위험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섹터별, 종목별 투자한도관리를 통한 분산투자로 포트폴리오 위험 축소 - 적극적인 자산배분 지향과 가치주와 장기성장주가 혼합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주식시장과의 고리도 축소 및 안정적인 초과수익 달성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비용	결산에 따른 갱신	-	보수 및 비용 결산일 기준 업데이트(2015.7.20)

의 투자기간별 예시>			
14. 이익배분 및과세에관한 사항 나. 과세	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항목 및 과세율 등 변경 등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14%, 주민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하 생략)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이하 생략)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하 생략)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이하 생략)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결산에 따른 갱신		재무제표,설정 및 환매현황,운용 실적 결산일 기준 업데이트 (2015.7.2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회계연도 업데이트 (기준일: 2014.12.31) 최근일자 업데이트(기준일 : 2015.7.23)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자본시장법 개정	(신설)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개정	<신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